

# 審 查 報 告 書

2002. 10. 14  
총무위원회

## 1. 審査經過

- 가. 提出日字 : 2002. 10. 4
- 나. 提出者 : 瑞山市長
- 다. 回附日字 : 2002. 10. 8
- 라. 上程日字 : 2002. 10. 14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企劃監査擔當官 : 金知榮)

### 가. 提案理由

-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는 분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소송 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대해 탄력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나. 主要骨子

- 현행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개업중인 변호사중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3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고문변호사 제도는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각종 이의신청」 「기타 법령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아 행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작금의 행정행태가 복잡 다양화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소송수행현황 2000년도 33건, 2001년도 31건, 2002. 9월말현재 27건)가 증가하고 분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는등 고문변호사 제도의 확대가 요구됨.
- 반면에 현재의 운영실태를 보면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 활용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의 본연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충실한 자문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로 수당을 충남도 및 타시군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질높은 행정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과연 현재의 업무량이 2명을 추가로 위촉할만한 것인지 그동안의 고문변호사 활용실적과 타시군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 6. 審査結果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 8 호
의 결 년 월 일	2002. 10. . (제 회)

##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2002. 10. 4.

# 서산시 고문변호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	---

제출년월일 : 2002. 10. 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개정이유

-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에는 분쟁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소송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대해 탄력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현행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개업중인 변호사중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3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없음.
- 관련법규
  - 고문변호사 위촉규정(대통령령 제4553호)

#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인”을 “3인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u>1인</u>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p>	<p>제2조(위촉) ----- ----- <u>3인이내</u>----- -----</p>